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33
----------	------

2024년 2월 27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1일, 문성호 의원
2.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성호 의원)

#### 1. 제안이유

-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21.7%, 중학생 41%, 고등학생 25.5%가 장래 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54.6%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두 번째로 19.8%가 ‘내가 잘하는 것(강점)과 못하는 것(약점)을 몰라서’를 이유로 희망 직업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직·간접적인 직업 체험을 통해 경험을 쌓아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그동안 한정된 직업군 내에서 이루어지던 진로 교육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교육감의 책무로 직로 개발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진로 진학 정보와 진학 상담 서비스 및 진로 체험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진로교육센터의 기능에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직군 연구·분석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진로 개발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함(안 제3조)
- 나. 센터 업무에 있어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무·직군 등 연구 및 분석 업무를 추가함(안 제10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1일 문성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33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진로체험 활동이 위축된 교육 현장에서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의 업무로 진로체험관련 연구 및 분석업무를 포함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진로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sup>1)</sup>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지도록 하며, 제4항에서는 진로교육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up>2)</sup>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빠르게 변하는 미래 직업환경에 대비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sup>3)</sup>

- 그러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sup>4)</sup>

---

1)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교육부, 2023.5.1.

를 살펴보면, 초·중학생의 진로체험·상담의 참여현황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고등학생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진로체험 만족도 점수에서도 초등 및 고등에서 진로체험 점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체험이나 상담 방식이 학생들의 진로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표-1] 학교 진로체험 및 상담 참여 현황 및 만족도(2020, 2022, 2023년)

(단위: %, 점)

구 분		참여 현황			만족도					
		2020	2022	2023	2020		2022		2023	
진로체험	초등학생	65.5	62.6	73.3	4.07	(0.85)	4.35	(0.83)	4.24	(0.91)
	중학생	82.2	75.6	81.5	3.88	(0.89)	3.84	(0.98)	3.86	(1.00)
	고등학생	67.2	69.3	69.4	3.86	(0.90)	3.81	(0.98)	3.79	(1.03)
진로상담	초등학생	36.7	34.8	41.6	3.98	(0.87)	3.92	(0.87)	3.98	(0.94)
	중학생	59.5	57.5	59.7	3.86	(0.92)	3.80	(0.98)	3.82	(1.04)
	고등학생	64.7	65.8	64.1	3.87	(0.87)	3.82	(0.98)	3.70	(1.05)

※ 출처: 교육부

- 주 1) 만족도는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 현황'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 적용함.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2]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및 도움 정도(중·고등학생)

(단위: %, 점)

진로체험 유형	중학생			고등학생		
	참여 현황	도움 정도	향후 참여희망	참여 현황	도움 정도	향후 참여희망
강연형·대화형	64.7	3.69 (0.98)	14.5	67.2	3.68 (0.91)	17.8
현장견학형	39.2	3.92 (0.95)	48.6	31.0	3.99 (0.89)	47.5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직업체험)	37.6	3.91 (0.94)	18.0	27.9	4.02 (0.86)	19.8

4)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3.11.24.), 15면 참조

진로체험 유형	중학생			고등학생		
	참여 현황	도움 정도	향후 참여희망	참여 현황	도움 정도	향후 참여희망
현장직업체험형 (실제직업체험)	34.3	4.01 (0.95)	58.9	23.6	4.08 (0.89)	59.3
학과체험형	38.2	3.93 (0.97)	26.7	42.3	3.94 (0.90)	30.4
진로캠프형	28.3	3.96 (0.97)	22.0	30.1	3.94 (0.86)	16.9

※ 출처: 교육부

주 1) 도움 정도는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현황'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으로 조사함.

2) '향후 참여 희망'은 중복 응답이 이루어진 문항이며, 비율은 전체 응답 인원 대비 각 항목별 응답 빈도로 계산함.

3)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 적용함.

4)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 포스트 코로나19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여 센터의 업무에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제3항)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제3항은 교육감에게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기르기 위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진로교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감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의무를 동 조례의 책무로 규정한 것 인바,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조례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진로교육센터의 업무(안 제10조제5호)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제5호는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업무에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직군 등 연구 및 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및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sup>5)</sup>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여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감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체험 및 진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직무·직군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직업 정

5)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보의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직업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sup>6)</sup> 이러한 직무·직군에 대한 연구·분  
석은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sup>7)</sup>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서울시 내 직업군을 조사·파악하여 학생들  
이 희망하는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생각되나,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직무·직군 등 연구 및 분석의 업무’ 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규정하기 보다는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  
는 국가차원의 사무로 볼 수 있는 바, 사무의 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0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직군 등의 연구 및 분석은 현재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해당 업무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직업  
현황과 전망’ 및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를 발표하고  
있어 국가 수준의 사무와 중복되므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진로체험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처를 발굴하는 업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2.16.).

---

6)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7) 고용노동부는 1999년부터 직업의 세부정보와 향후 일자리 전망 등을 수록한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해오고 있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동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업무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직군 등 연구 분석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이에 대해 현재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은?(질의: 심미경 위원)
- 현재 진로교육센터의 업무는 진로체험처를 발굴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직무·직군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음.(답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0조제5호를 삭제함.

####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33
----------	------------

제안연월일 : 2024년 2월 2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 중 ‘직무·직군 등 연구 및 분석’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자체 소관 업무로 보기에 어려운바, 이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 2. 주요내용

-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직군 등 연구 및 분석’을 삭제함(안 제10조제5호).

##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책무) ①·② (생략) <신설>	제3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센터의 업무) 제9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10조(센터의 업무)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직군 등 연구 및 분석</u> 6. (생략)	제10조(센터의 업무)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삭제>  5. (개정안 제6호와 같음)
제12조(자문)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제12조(자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2조(자문)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p>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p> <p>1. · 2. (생략)</p> <p>4. ~ 7. (생략)</p>	<p>-----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6.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 -----.</p> <p>1. · 2. (개정과 같음)</p> <p>3. ~ 6. (개정안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책무) ①·②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lt;신설&gt;</u></p>  <p>제12조(자문) 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위원회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2.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4. ~ 7.</u> (생략)</p>	<p>제3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③ <u>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12조(자문)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 ---</p> <p style="padding-left: 20px;">1. 2.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3. ~ 6.</u>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